

충청북도시읍면아동위원정수에 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62
----------	-----

제안이유

- 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 굳이 조례가 없어도 아동위원 운영에 문제가 없으며
- 최근 3년간 활동실적이 전무하여 존치의의가 없는 조례로 폐지코자 하는 것임.

주요골자

-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기 위하여 '62. 8. 7일 제정된 조례로서 최근 3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동조례폐지

첨 부

- 충청북도시읍면아동위원정수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1부.

충청북도시읍면아동위원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(안)

충청북도시읍면아동위원정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